

가정상담

2023 | 05
통권 477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 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본소 객배희 소장은 4월 19일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여 2023년 2월 취임한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상담소와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협력 관계를 살피고 앞으로도 상담소와 법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향후 본소 방문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33면)

▶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이 법률구조 사업에 헌신한 공로로, 4월 25일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관련기사 33면)



◀ 상담소는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역사 내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출장 법률상담 및 교육 행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33면)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 가정

15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소송구조 분석 - 미성년후견인 선임

23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6)

25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❹

26 · 가정폭력상담실

29 · 어떻게 할까요

32 · 좋은 책

여성의 다시쓰기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가정의 달을 보내며 -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가정과 가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휴일과 행사가 많아 더불어 축하와 기쁨을 나눌 자리도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마냥 기쁜 날이지만 어른들은 때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노년의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5월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또 깊이 이해합니다. 피곤한 일상에 해야 할 일이 더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이란 이러한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오늘의 즐겁고 기쁜 순간으로 다른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사회, 급속한 변화라는 우리 사회를 수식하는 말들은 우리 가정과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일인가구가 40%를 넘어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실로 놀라운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재 우리 가족 구성원에는 농경시대 대가족제도의 관습과 문화적 기억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를 거치며 보편적 가족제도로 등장하게 된 핵가족 문화 그리고 일인가구 체제의 혼재는 물론 체화된 가부장제 그리고 가정의 민주화, 평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의 문화가 가족 구성원 각각 아닌 한 개인에게도 모두 섞여 있어 그로 인한 가치의 혼란스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낮은 혼인율과 높은 이혼율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우리 사회 가정 문제의 보편적 양상으로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낮은 혼인율이 낮은 이혼율로 이어지고 있으며 저출산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은 세대 갈등을 넘어 경제적 양극화와 성별 갈등의 심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혼인과 가정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혼인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이고 가정 내의 오랜 갈등은 그 내용의 심각성과 더불어 노년이혼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세대 차이가 두드러진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고령사회에서 노년이혼이 이혼율을 견인하는 상황에 있으며 이혼사유는 전반적으로 기타 사유인 6호 사유가 가장 많은 데 비해 20대에서 50대까지 여성의 경우 특히 2, 30대 여성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부당한 대우인 3호 사유를 이혼의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상담사례에 비추어 보면 여성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높아 어떠한 폭력적 언사나 행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데 반해 남성의 경우는 아직도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더 무책임하고 가혹한 폭력을 행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이 가정 내 갈등은 물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에 '기계적 평등'을 기준으로 삼아 혼인과 가정생활 전반에 손해와 이익을 따지다 보니 '명절이면 각자의 집으로 가자'는 어이 없는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책이라 한다면 가정은, 혼인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우리 사회와 가정의 이러한 현상, 인식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사회 자체의 존립을 염려해야 할 시간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가정과 가족의 과제를 모든 사회 문제의 최우선에 두고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과제와 더불어 현실의 가정 문제에도 상담소는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하나로 당장 눈앞에 떨어진 고령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지장애인의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이들에게 필요한 성년후견제의 제도적 보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앞장섰던 상담소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보완과 발전을 위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5월 24일에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 평등과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언제나 앞장 서온 상담소는 오늘도 최일선의 현장에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모든 가정마다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 가정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 혼인신고 후 29.7% 별거 중

주요 발견 사항

상담소 방문 비율,
한국인 남편 64.8%, 외국인 아내 35.2%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상담보다 1.8배 더 많아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
(2012년 40.9%→2022년 64.8%)

연령대, 한국인 남편은 50대,
외국인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아

남성 연상 중 17세~30세 차이 27.1%
(일반가정 이혼상담 4.2%)

교육정도,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낮아
(중졸 이하 비율, 한국인 남편 15.5%, 외국인 아내 11.8%)

재혼 비율 32.9%(일반가정 이혼상담 16.0%)

외국인 아내의 87.0%,
한국인 남편의 55.2% 안정적 수입 없거나 미상

외국인 아내의 86.9%,
한국인 남편의 72.2% 보유재산 없거나 미상

혼인신고 후 29.7% 별거 중

한국인 남편은
기타,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으로 상담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 기타, 남편의 가출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국적 취득하자마자 갑자기 변해!
순간 참지 못해 내가 먼저 폭행!

● 아내의 외도, 자신의 폭력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10살 차이가 나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동안 아이 두 명을 낳았고 별 문제없이 지냈다. 그런데 아내가 국적을 취득한 후 갑자기 본국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며 변했다.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점점 엉망이 되었다. 나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새벽에 나가다가 그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아내와 마주친 적도 있었다. 국제결혼한 경우 아내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바람나는 아내들이 많다고 주변에서 들었다. 아내도 외도를 하는 것 같았고, 점점 감정이 쌓여 다투다가 결국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때렸다. 같이 살기가 너무 힘이 든다.

외국인 아내

- 알콜중독자인 한국인 남편에게 수시로 폭행 당해!

● 남편의 폭력, 알콜중독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나는 베트남 출신이며 10년 전 남편과 결혼하였다.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알콜중독자였다. 남편의 폭행으로 쉼터에 있기도 했다. 아이 생각에 다시 들어갔는데 남편과 살던 중 3년 전 또 다시 폭행이 발생해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남편은 여전히 술에 빠져 있으며, 자녀 양육에 관심도 없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 나는 이혼을 원하나 50대인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다시 결혼을 못한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내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려고 하자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위자료를 주장하고 싶다.

한국인 아내

- 남편, 시부모와 생활양식 및 가치관 달라 힘들어!

●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로 남편과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40대 한국 여성)

남편은 프랑스인이다. 살면서 서로 가치관이 달라 갈등이 많았다. 남편은 부부만 여행하기를 원하는 등 부부중심적이었으나 나는 자녀들이 어려서 부부만의 여행 등을 함께 하지 못하였다. 시부모와도 생각하는 바가 달라 나와 갈등이 많았는데 남편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일터에서 다른 젊은 여성과 외도도 하였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면서 내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외국인 남편

- 부모로만 살자는 아내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 아내와의 성격차이, 가치관차이 때문에 이혼 원하는 사례(내담자 40대 스페인 남성)

10년 전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다. 처음에는 스페인에서 살았고, 2년 전 다시 한국에 왔다. 한국에 온 후 아내는 처가로 가고 나는 직장 근처에 집을 얻었다.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자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나 아이들이 있으니 이혼은 하지 말고 부모로만 살자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부부라고 할 수 없어 이혼하고자 했더니 아내가 응하지 않는다. 성격차이도 심하고 가치관도 다른 아내와 같이 살기 싫다.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고 싶다.

2022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상담 총 건수는 989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704건(71.2%),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85건(28.8%)이었다.¹⁾

상담소 다문화 상담 건수,
실제 서울지역 다문화 이혼 건수의 92.1%에 달해

2023년 3월 1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5,810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074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989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92.1%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아 심각한 대립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이혼 절차 및 방식,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해왔다. 한편,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 사실 자체를 없애고자 혼인무효나 취소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소송 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1)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여성 11명)도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본국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으로 표기함.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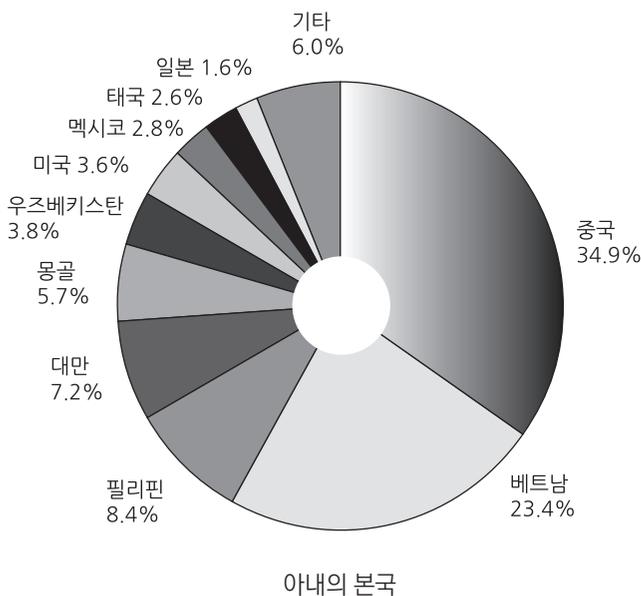
1.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외국인 아내 방문 35.2%, 한국인 남편 방문 64.8%

한국인 남편 상담이 외국인 아내 상담보다
약 1.8배 더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704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248건(35.2%),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456건(64.8%)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8배 많았다. 다문화가정 상담에 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년 14.0%, 2008년 27.2%, 2009년 36.1%, 2010년 29.4%, 2011년 37.5%, 2012년 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아(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13년 51.9%, 2014년 51.0%, 2015년 63.2%, 2016년 64.1%, 2017년 65.2%, 2018년 68.4%, 2019년 61.8%, 2020년 65.0%, 2021년 66.2%, 2022년 64.8%)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한국 남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아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704명 중 중국이 246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65명(23.4%), 필리핀 59명(8.4%), 대만 51명(7.2%), 몽골 40명(5.7%), 우즈베키스탄 27명(3.8%)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50대,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27.1%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302명(42.9%), 40대 174명(24.7%), 50대 103명(14.6%), 60대 이상 57명(8.1%), 20대 47명(6.7%)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50대 249명(35.4%), 40대 198명(28.1%), 60대 이상 188명(26.7%), 30대 62명(8.8%), 20대 5명 (0.7%)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25명(3.6%),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621명(88.2%),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31명(4.4%), 미상인 경우는 27명(3.8%)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7~30년 차이가 168명(2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9~10년 102명(16.4%), 5~6년 88명(14.2%), 15~16년 78명(12.6%), 1~2년 · 13~14년 각 49명(각 7.9%), 7~8년 33명(5.3%), 11~12년 31명(5.0%), 3~4년 14명(2.3%), 31년 이상 9명(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2년과 9~10년 차이가 각 12명(각 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6년 · 7~8년 · 13~14년 각 2명(각 6.5%), 17~30년 1명(3.2%) 순으로 나타났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지인의 소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내를 만났고 바로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아내는 20대 초반으로 나오는 서른 살 차이가 난다. 6개월 후쯤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다시 가서 지내면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혼인 초에는 한국에서 지내기로 하였는데 아내가 임신을 이유로 계속 입국을 미뤘다. 친정 가족들이 설득해 아내가 임신 6개월 때 한국에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계속 가족들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기만 하였고, 결국 3주만에 다시 간 후 1년 넘게 오지 않고 있다. 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매월 생활비를 보냈으나 아내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을 안 사줄 것이면 오지도 말라고 해서 아이 얼굴도 못 봤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을 요구했더니 상대도 이혼하자고 한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20대 태국 여성)

나와 태국에서 왔고 남편이 나보다 스무 살 많다. 혼인한 지 6년 되었는데 혼인 기간 내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왔다. 임신 중에도 남편에게 많이 맞았고, 외국인 등록증도 남편이 소지하고 내게 주지 않았다. 내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내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성에 대한 집착도 심해 나를 유흥업소 여자 대하듯 하였다. 더 이상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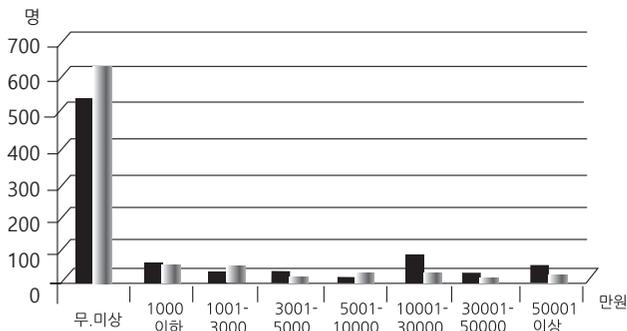
중졸 이하 비율, 외국인 아내 11.8%, 한국인 남편 15.5%

외국인 아내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 18.8%(각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남편은 고졸이 23.9%(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4.3%(30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9.9%(70명)이었고, 중졸 이하(무학, 초졸, 중졸 합산)도 외국인 아내는 11.8%(83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15.5%(109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87.0%, 한국인 남편의 55.2%
안정적 수입 없거나 미상

외국인 아내의 86.9%, 한국인 남편의 72.2%
보유재산 없거나 미상

외국인 아내는 주부(204명, 29.0%), 한국인 남편은 회사원(184명, 26.1%)이 가장 많았다. 한편, 주부와 무직,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87.0%, 한국인 남편은 55.2%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재산 보유액별

아내의 86.9%(612명)와 한국인 남편의 72.2%(508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1.3%(572명), 한국인 남편의 59.2%(417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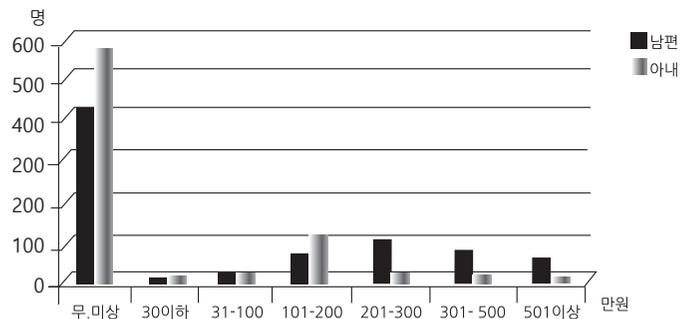
다문화가정 상담 재혼 비율 32.9%,
일반 이혼상담보다 재혼 비율 높아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34.7%(244명)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16.2%(114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2.8%(20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13.9%(98명), 미상 32.4%(228명)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2.9%로 일반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16.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54.1%(381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20명),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1.6%(11명)로 나타났다.

● **재혼 후 아내의 전혼자녀와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70대 한국 남성)

10년 전쯤 중국인 여성과 혼인하였다. 나와 상대방 모두 재혼이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딸과 손자를 데려와 살기 시작했다. 집에서 아내와 그 딸은 자신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아예 남 취급을 했다. 그 딸과는 아예 언어가 달라 말도 할 수 없었고 음식도 서로 맞지 않아 힘들었다.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에도 응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나와 혼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서 내가 집을 나와 버렸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월 수입별

● **재혼 후 남편과 경제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60대 중국 여성)**

나는 중국인이었는데 10년 전 한국 남성과 혼인해 한국으로 왔다. 나와 남편 모두 재혼으로 만났고 전혼 자녀가 두 명씩 있다. 지난 10년간 남편과 함께 일을 하였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돈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자신의 딸과만 상의하였다. 내 아이들은 아예 존재조차도 없는 양 생각하였고 내가 내 아이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결국 갈등이 심해지자 남편은 나에게 맨몸으로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받고 싶다.

전체의 29.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혼인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0.6%(4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1.4%(10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5.5%(39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12.6%(89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14.3%(101명), 10년 이상은 51.7%(364명)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29.7%(209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37.8%(7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22.0%(46명), 3년 이상~5년 미만 12.0%(25명), 2년 이상~3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 각 11.5%(각 24명), 1년 이상~2년 미만 5.3%(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14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11명에 달했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78.6%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593명이었고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198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33.4%에 달하였다. 국적취득에 있어서 결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별거 시에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최소한의 협조도 받지 못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이혼을 원하더라도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러 소송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혼상담 사유 분석²⁾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기타, 남편의 가출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은
기타,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으로 상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135명)

- 1위 '남편의 폭력'(민법 제840조 3호)(63.7%, 86명)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생활무능력·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성격차이·
자녀학대, 의처증 등이 우선 순위임)
(6호)(20.7%, 28명)
- 3위 '남편의 가출'(2호)(8.1%, 11명)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244명)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결혼조건속임,
성격차이·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
(민법 제840조 6호)(53.3%, 130명)
- 2위 '아내의 가출'(2호)(37.7%, 92명)
- 3위 '아내의 외도'(1호)(4.9%, 12명)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을 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을 한 경우에는 3호 '남편의 폭력'이 63.7%(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0.7%(28명), 2호 '남편의 가

2) 이하에서는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상담 총 704건 중 이혼 사유를 제시한 379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석하였다.

출' 8.1%(11명), 1호 '남편의 외도' 5.9%(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소의 2022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3,162명)가 제시한 사유 역시 3호(남편의 폭력 53.9%, 1,704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빚, 생활무능력 순 28.1%, 887명), 2호(남편의 가출 10.3%, 326명), 1호(남편의 외도 7.7%, 242명) 순으로 나타나 이혼 사유 순위면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외국인 아내들이 1순위 이혼상담 사유로 제시한 '남편의 폭력' 비율은 63.7%로 상담소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편의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53.9%)보다 더 높아 외국인 아내들이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이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들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한 사유는 6호 '기타 사유'인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8명 중 '생활무능력' ·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 '성격차이' · '자녀학대'가 각 14.3%(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의처증' 10.7%(3명) 순이었고, 그 외 '결혼조건속임' · '경제갈등' · '빚' · '성적갈등' · '무시/모욕' · '폭언' · '장기별거' · '시가와의 갈등' ·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각 3.6%(각 1명)로 나타났다.

● **한국인 남편의 생활무능력, 자녀학대, 폭력 등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40대 일본 여성)

15년 전 한국 남편과 혼인하였고,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이 5년 전부터 아예 일을 안해 생활이 어렵다. 그동안 내게 소리치고 위협한 적이 많았다. 그래도 참았는데 몇 달 전 남편이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며 큰아이를 때리려고 해 내가 막았더니 나를 때렸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다시 때리지는 않았으나 소리를 치는 것은 계속되었다. 더 이상은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다 놓고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나는 영주권을 취득해 계속 한국에 있고 싶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30대 러시아 여성)

3년 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 남편만 믿고 왔는데 남편은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다. 잠깐 회사에 다니기는 했는데 술 문제로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얼마 전 새로운 곳에 취직했으나 얼마나 다닐지 모르겠다. 늘 술에 빠져 있고, 밤새 나를 괴롭힌 후 아침이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를 밀친 적도 많고 목을 조르기도 했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 그러나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가? 나는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

●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20대 필리핀 여성)

나는 필리핀 사람인데 2년 전 결혼해서 한국으로 왔다. 남편도 매우 성실하다. 그게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지금은 남편의 그런 태도가 지나쳐 너무 힘이 든다. 나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내게 일을 강요한다. 나는 일을 해서 남편에게 다 준다. 남편은 다른 필리핀 여성들과 나를 비교하며 더 일을 많이 해야 우리가 더 큰 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끊임없이 나를 압박한다. 이렇게 살려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닌데 그런 남편이 너무 부담스럽다. 결혼 생활이 너무 답답해 살 수가 없다.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을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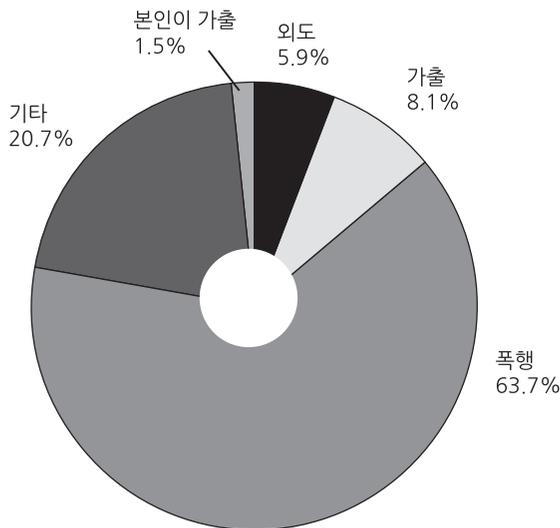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을 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53.3%(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 37.7%(92명), 1호 '아내의 외도' 4.9%(12명), 5호 '아내의 실종' 2.0%(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2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854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빚 순 59.7%, 510명), 2호(아내의 가출 26.7%, 228명), 3호(아

내의 부당대우 7.5%, 64명), 1호(아내의 외도 5.5%, 47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남편이 가장 많이 제시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30명 중 '장기별거'가 66.2%(8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10.0%(13명), '결혼조건속임' 6.2%(8명), '성격차이'·'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3.1%(각 4명), 경제갈등 2.3%(3명), '불신'·'폭언' 각 0.8%(각 1명) 순이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만을 문의한 경우 편의상 6호사유를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10명 있었다.

한국인 남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한 사유는 '아내의 가출'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남성 내담자들은 외국인 아내와 혼인 초부터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양한 이유로 아내가 집을 나가 잠적해 서류상으로는 혼인관계가 남아 있다고 상담해왔다. 심지어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자마자 사라지거나 특별한 갈등이 없는 경우에도 갑자기 잠적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한국인 남편은 연락을 끊은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이혼이 가능하고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는 배우자로 인해 기초연금, 주거복지 혜택 등을 받는 데에도 제한이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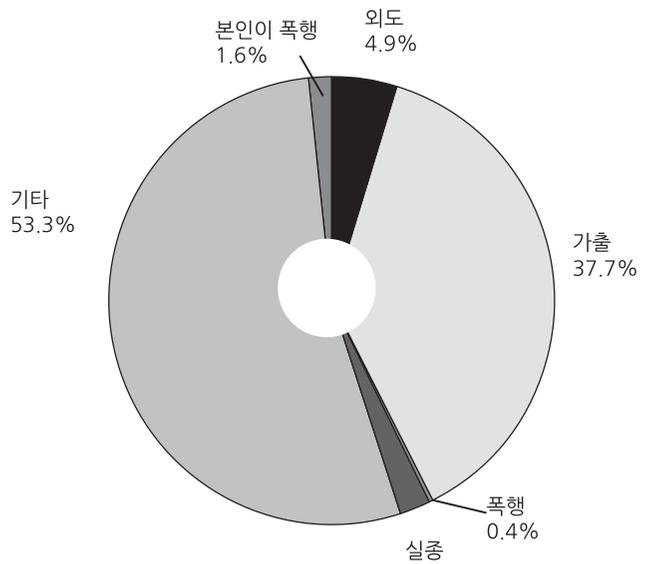
아내가 상담

●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3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네 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 현재 집은 내 명의로 된 자가이나 용자가 있어 내 수입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내게 돈을 더 요구한다. 주변에 돈 많은 남편들과 나를 비교한다. 또한, 장인 장모도 한국으로 와 현재 같이 지내고 있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도 아내는 자신의 부모에게 잘 대하지 않는다고 늘 화를 낸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계속 다투고 있고, 가끔 몸싸움도 하는 상황이다. 아내가 나를 먼저 폭행하고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게 된다. 아내와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견디기 어렵다.

● 아내의 외도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30대 한국 남성)

아내가 외도를 하여 이혼하려고 한다. 아내와 4년 전 혼인하였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내가 바로 외도를 시작하였다. 아내는 데이팅앱에 결제를 하기도 하였고, 핸드폰을 숨기고 늘 통화내역을 지운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아내의 외도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현재 3세 아이가 있는데 친권, 양육권을 내가 갖고 이혼했으면 한다.



남편이 상담

● **혼인신고 후 상대가 입국하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2005년에 같이 일하던 지인의 소개로 조선족인 상대방을 알게 되었다. 소개를 받은 후 화상통화를 몇 차례 하였고, 상대방이 혼인외사를 밝히며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해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신고 후 다시 연락을 하자 상대방은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였지만, 이 연락을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물론 지인마저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17년 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현재 나는 일을 하다 다쳐 생활이 어렵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취약 계층인데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상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상담(총 989건) 중 28.8%(285건)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외국인 남편의 상담보다 5.1배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상담 285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47건(16.5%),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238건(83.5%)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5.1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일본, 미국, 모로코, 스리랑카, 싱가포르 순

그 외 태국·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인도·브라질·이집트 등 다양해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285명 중 중국이 83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본 66명(23.2%), 미국 64명(22.5%), 모로코 10명(3.5%), 스리랑카 7명(2.5%), 싱가포르

르 6명(2.1%), 태국·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인도·브라질·이집트 각 3명(각 1.1%), 프랑스·스위스·미얀마·대만·우즈베키스탄 각 2명(각 0.7%), 스페인·영국·호주·뉴질랜드·세르비아·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나이지리아·콩고·우간다 각 1명(각 0.4%)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가 베트남, 필리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던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일본, 미국, 모로코, 스리랑카,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혼상담 사유 분석³⁾

외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3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성격차이)'(6호)(100.0%, 3명)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186명)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등이 우선 순위임)'(6호)(48.4%, 90명)
- 2위 '남편의 가출'(2호)(28.5%, 53명)
- 3위 '남편의 폭력'(3호)(18.8%, 35명)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있었고, 6호 사유는 모두 '성격차이'였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48.4%(9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남편의 가출' 28.5%(53명), 3호 '남편의 폭력' 18.8%(3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90명 중 '장기별거'가 77.8%(7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

3) 이하에서는 남편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상담 총 285건 중 이혼 사유를 제시한 189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석하였다.

차이' 4.4%(4명),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3.3%(3명), 불신·생활무능력·폭언 각 2.2%(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 사항 요약

2022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상담 총 건수는 989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704건(71.2%),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85건(28.8%)이었다.

2023년 3월 1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5,810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074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989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92.1%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704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248건(35.2%),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456건(64.8%)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8배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704명 중 중국이 246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65명(23.4%), 필리핀 59명(8.4%), 대만 51명(7.2%), 몽골 40명(5.7%), 우즈베키스탄 27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일반가정은 남편이 1~2년 연상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 연상 중 17~30년 차이, 일반가정 4.2%/다문화가정 27.1%).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교육정도가 낮은 중졸 이하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한국인 남편 15.5%, 외국인 아내 11.8%).

외국인 아내의 86.9%와 한국인 남편의 72.2%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7.0%, 한국인 남편의 55.2%가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16.0%였으나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32.9%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비율이 높았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29.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22.0%, 3년 이상~5년 미만 12.0%, 2년 이상~3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 각 11.5%, 1년 이상~2년 미만 5.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기타, 남편의 가출 순으로 많았고, 한국인 남편이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기타,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으로 많았다.

김진영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소송구조 분석

가정위탁아동 미성년 후견인 선임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시설보호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가 필요한 아동보호체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복리와 직결되는 제도적 장벽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가정위탁 만족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위탁양육 중 가장 어려웠던 점 1순위로 17.1%의 위탁부모들이 ‘보호자로서 위탁부모의 법적·제도적 권리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위탁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는 ‘법적 제도 개선’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탁부모들은 “통장 만드는 것, 여권 만드는 것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이를 위해 할 수 없음에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도 필요한 서류조차도 위탁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탁부모의 아동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절실히 보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야 할 나이가 되어

가는데 부모처럼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류 땔 때 보호자 필요 시 어려움 겪음” 등의 자유 의견을 개진하였다.¹⁾

본소는 위탁가정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아동권리보장원(舊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으로부터 사례를 위탁받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본소의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소송구조 사건은 2016년 6건으로 시작하여 2019년 24건, 2020년 52건, 2021년 74건, 2022년 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이것은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가정위탁 현장에 본소가 독보적으로 꾸준히 법률구조를 지원해 오으로써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권리의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소가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위탁가정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소송구조 사건(78건)²⁾의 상담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서면 및 법원의 재판 내용 등을 토대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탁현황, 소송사유 및 소송결과를 분석하고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 2022 가정위탁 만족도조사 보고서(2022), 301면, 310-311면 참조.

2) 2022년 가정위탁아동 관련 소송구조는 친권상실 등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등을 포함하여 78건으로, 총 58위탁가정(위탁부모 58명, 위탁아동 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I. 소송구조 대상

1.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1) 성별

2022년 소송구조가 진행된 위탁가정은 총 58가정으로 위탁부모 58명, 위탁아동 67명이었다. 위탁부모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9명(15.5%), 여성 49명(84.5%)으로 위탁부모 중 위탁모의 신청이 5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법에서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어(민법 제930조 제1항), 위탁부모 중 한 명만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위탁부모 중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탁아동의 성별은 남아 39명(58.2%), 여아 28명(41.8%)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위탁부모의 연령을 보면 50대 20명(34.5%), 40대와 60대 각 15명(각 25.9%), 30대 6명(10.3%), 20대 2명(3.4%)의 순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위탁부모의 비중이 60.4%로 높게 나타났는데, 소송구조 사례를 보면 자신의 자녀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동을 위탁받는 경우 및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리양육하며 위탁보호를 지정받는 경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탁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8-13세 23명(34.3%), 4-7세 20명(29.9%), 1-3세 17명(25.4%), 14-18세 7명(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등 아동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행정 처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친부모의 존재여부

친부모가 있는 위탁아동 54명(80.6%), 친부모가 없는 위탁아동 13명(19.4%)으로, 위탁아동 10명 중 8명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였다.

〈표 1〉 위탁부모의 주요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	15.5
	여성	49	84.5
연령	20대	2	3.4
	30대	6	10.3
	40대	15	25.9
	50대	20	34.5
	60대	15	25.9
계		58	100.0

〈표 2〉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아	39	58.2
	여아	28	41.8
연령	1-3세	17	25.4
	4-7세	20	29.9
	8-13세	23	34.3
	14-18세	7	10.4
친부모 존재여부	있음	54	80.6
	없음	13	19.4
계		67	100.0

2. 가정위탁 현황

1) 보호유형

가정위탁은 위탁형태에 따라 대리양육위탁(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보호유형별 비율은 일반위탁 31건(53.4%), 친인척위탁 17건(29.3%), 대리양육위탁 6건(10.3%), 전문위탁 4건(6.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 가정에서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나 친인척양육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가끔 연락이 되어 친부모의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전제가 되는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위탁의 경우는 친부모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부모의 협조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보호유형

구분	빈도(건)	비율(%)
대리양육	6	10.3
친인척	17	29.3
일반	31	53.4
전문	4	6.9
계	58	100.0

2) 위탁사유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의 가출/연락두절이 된 경우가 23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 19건(32.8%), 이혼/별거 11건(19.0%),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 10건(17.2%), 부모가 사망한 경우와 부모의 학대/방임에 의한 경우가 각 8건(각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수감이나 질병에 의한 입원으로 위탁된 경우가 7건(12.1%), 미혼모시설/입양시설에 맡겨진 경우가 5건(8.6%)이었다.

부모의 사망과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사유를 제외하고, 부모의 양육포기 또는 학대, 방임, 유기 등에 따른 위탁사유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도 친부모의 돌봄이나 친가정에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탁아동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4〉 위탁사유(중복가능)

구분	빈도(건)	비율(%)	전체(건)	전체(%)
부모의 사망	8	13.8	58	100.0
부모의 가출/연락두절	23	39.7	58	100.0
부모의 이혼/별거	11	19.0	58	100.0
부모의 수감/질병	7	12.1	58	100.0
부모의 학대/방임	8	13.8	58	100.0
베이비박스(아동일시보호소)	19	32.8	58	100.0
미혼모시설/입양시설	5	8.6	58	100.0
부모의 위탁/입양 의뢰	10	17.2	58	100.0

II.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1. 사건별 분류

2022년에 진행한 소송구조 사건 총 78건을 살펴보면,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33건으로 42.3%를 차지하였다. 친권자가 없는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은 16건(20.5%) 진행되었다. 위탁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 명의로 남긴 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은 3건(3.8%),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위탁부모가 위탁아동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동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도 7건(9.0%) 있었다. 그 외 신청사건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사건이 각각 18건(23.1%), 1건(1.3%) 있었다.

〈표 5〉 사건별 분류

구분	빈도(건)	비율(%)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33	42.3
미성년후견인 선임	16	20.5
채무부존재 확인	3	3.8
성과 본의 변경	7	9.0
특별대리인 선임	18	23.1
미성년후견인 임무수행 처분명령	1	1.3
계	78	100.0

2. 소송사유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원인으로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을 꼽았다(67건, 85.9%). 또한 친권자가 아동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아동의 명의로 핸드폰, 인터넷 등을 개통하는 등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 친권남용을 막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경우도 3건(3.8%) 있었으며, 위탁아동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소송을 결심한 경우도 8건(10.3%) 있었다. 이처럼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한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위탁아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바가 컸다.

〈표 6〉 소송 사유

구분	빈도(건)	비율(%)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양육 안정성)	67	85.9
정체성 혼란, 위축	8	10.3
친권남용	3	3.8
계	78	100.0

3. 소송 결과 및 기간

2022년에 진행한 사건 중 2023년 4월 현재까지 48건(61.5%)이 종결되었고, 취하한 사건 1건을 제외한 47건 중 46건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승소율 97.9%). 심판 청구에서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인 24건(50.0%),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16건(33.3%),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8건(16.7%)으로, 10건 중 8건의 사건이 6개월 내에 종결되었다.

〈표 7〉 소송 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진행중	30	38.5
종결	48	61.5
계	78	100.0

〈표 8〉 소송 기간

구분	빈도(건)	비율(%)
3개월 미만	24	50.0
3개월-6개월 미만	16	33.3
6개월-1년 미만	8	16.7
계	48	100.0

〈표 9〉 소송 결과

종결사건	결과			승소율(%) ³⁾
	승소	기각	기타 ⁴⁾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9	1	0	90.0
미성년후견인 선임	14	0	0	100.0
채무부존재 확인	2	0	0	100.0
성과 본의 변경	6	0	0	100.0
특별대리인 선임	14	0	1	100.0
미성년후견인 임무수행 처분명령	1	0	0	100.0
합계	46	1	1	97.9

3) 승소율 : (승소)/(승소+기각)

4)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 취하 1건.

III. 소송구조 사례 및 문제점

1. 부모를 알 수 없는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청구권자

민법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제932조 제1항에서 가정법원은 유언에 의해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미성년자에게 친족이 존재하고, 그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청구적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 유기 아동과 같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위탁아동의 경우 위탁아동을 위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 적극적일 수 있는 사람은 위탁부모가 유일할 것이다.

본소는 위탁부모를 민법 제932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위탁부모를 청구인으로 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을 진행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16년부터 본소에 의뢰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중 종결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각 담당 재판부도 본소와 의견을 같이 하여 위탁부모의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위탁부모에게 청구적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사례 1>

위탁아동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어 친부모를 알 수 없다. 위탁아동은 임시보호소 입소 후 현재의 위탁부모를 만나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아동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꾸준한 병원 진료는 필요하지만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이 없어 원활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위탁모가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위 조항의 청구권자로서의 이해관계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이 관리되는 데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일부 견해가 있다. 위 견해처럼 민법 제932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을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대부분의 부모를 알 수 없는 위탁아동을 위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위탁아동 본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뿐일 것이다.

위탁아동 본인이 청구권자가 될 경우 위탁아동은 미성년자로서 제한능력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2조⁵⁾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2조는 특별대리인 선임의 신청권자로 친족,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위탁아동은 친족의 신청을 기대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을 위의 견해와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도 불가능하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바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직접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의뢰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위의 견해에 따르면 부모를 알 수 없는 위탁아동이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의 청구권자가 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에 있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 이와 관련된 부서가 정해져있지 않아 해당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⁶⁾

위 <사례 1>에서 담당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사례의 청구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위탁보호결정을 하는데 위 시·도지사 등은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하면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위탁아동에게 친권자, 후견인이 없음을 확인할 것이고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후견인 선임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위 아동복지법은 위 경우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도지사 등이 후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에 많은 위탁부모들이 아동권리 보장원을 통하여 본소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다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례 1>의 사건은 현재 약 2년 째 해당 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의 일관되지 않은 법 해석으로 절차는 지연되고 위탁아동 보호에 대한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후견제도의 본질이 피후견인의 보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932조 제1항

5)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입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6)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35면.

의 이해관계인은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이라도 무방하다는 판례의 일관된 견해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이 지정된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된다. 본소에 의뢰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을 살펴보면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은 위탁아동들이 다수 있다. 대부분의 위탁아동들은 보호시설을 퇴소하며 후견인 지정이 취소되지만 퇴소 후에도 보호시설 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탁아동들이 존재한다. 위 아동들의 민법상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에 민법 제940조⁷⁾를 적용하여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해야 하는지, 민법 제932조 제1항⁸⁾을 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각 재판부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례 2>

위탁아동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여 해당시설의 장이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위탁아동은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고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는데 위탁모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위한 여권 발급, 은행 업무, 문화바우처 신청 등 위탁아동의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후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계속하여 보호할 예정으로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사례 3>

위탁아동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여 해당시설의 장이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위탁아동은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고, 현재까지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부모가 아닌 보호시설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탁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후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계속하여 보호할 예정으로 위탁아동이 성장하는 데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사례 2>와 <사례 3>은 위탁아동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으로 부모를 알 수 없는 점,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이 지정된 후 보호시설을 퇴소하였으나 후견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점,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등 위탁아동을 둘러싼 법적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 본소는 위 사건들에 대하여 모두 미성년후견인 변경을 청구하였다.

<사례 2>의 경우 담당 재판부는 본소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탁아동의 후견인을 보호시설의 장에서 위탁모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례 3>의 경우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취지는 고아인 사건본인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한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을 위탁모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나, 구청장 등이 지정한 후견인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지정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로 인하여 후견인이 없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본소는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라 위탁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한 지자체장에게 후견인 지정 취소를 요청하였고, 미성년후견인 선임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7)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8)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편 <사례 3>의 경우 재판부는 시설미성년후견법은 보호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하면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던 보호시설의 장은 퇴소한 아동에 대한 임무가 종료되므로 시설미성년후견법 제7조에 따라 후견인 지정을 취소하고 민법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이 후견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면 법리적 해석을 고집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례 3>의 보정명령으로 본소는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후견인 지정취소를 한 후 담당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여 보정기간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해당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되었다. 또한 후견인 지정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인 위탁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게 되는 결과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사례 2>의 사건은 3개월 만에 종결된 데 반하여 <사례 3>의 사건은 8개월째 진행 중이다. 유사한 내용의 사안임에도 <사례 3>의 사건은 <사례 2>에 비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른 추가 시간이 소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례 3> 재판부의 견해를 따르게 될 경우 후견인 지정 취소 후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탁아동에게는 법정대리권의 공백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에서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의 목적이 미성년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사건이야말로 위 대법원 결정과 같이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사료된다.

IV. 소결

위의 분석 결과를 검토할 때, 다수의 위탁아동들은 친권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 친권자의 친권남용으로 인한 피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및 위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탁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소는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를 진행하였다. 본소가 본격적으로 관련 사건을 진행한 지 약 7년이 다 되어 가지만, 사례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도 법원의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22년 11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배경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강화를 강조하며,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⁹⁾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정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진행 관련 의미 있는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법률안 제50조¹⁰⁾에 비송능력을 신설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송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항은 친권 상실 신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어 미성년인 위탁아동이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친권상실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위 <사례 1>에서와 같이 부모 없는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에서 위탁부모의 청구인 자격을 다투거나,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진행을 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22년 진행한 사건의 위탁아동 연령 분포¹¹⁾를 보면 7세 이하의 아동이 37명으로 전체의 55.3%, 13세 이하의 아동이 60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한다. 대법원이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9) 법무부 보도자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실 법무심의관실(2022. 11. 8.), 2면.

10) 제50조(비송능력) 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2 나목, 라목, 아목 및 자목의 각 사건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3 가목의 각 사건, 별표 3 나목 4)중 양육비 지급청구 사건, 별표 3 다목 및 라목의 각 사건. 다만, 별표 3 가목 1)에 따른 사건 중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에 관한 처분 사건은 그렇지 않다.

③ 가사비송절차의 비송능력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표 2>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참조.

해야 한다¹²⁾고 하고 있고, 11세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¹³⁾도 찾아볼 수 있으나 법원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의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위 개정안을 적극 반영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개정안 조항은 제120조¹⁴⁾로 친권상실 신고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외에 사건본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고 하였다. 부모가 있는 위탁아동의 경우 친권상실 신고와 함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한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친권상실 신고 사건의 관할법원은 상대방인 친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이나, 대부분의 아동들이 부모와 연락이 단절되어 부모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위탁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뒤 보정명령을 받아 친권자의 주소를 확인한 후 신청을 취하하고 재 접수하거나 사건을 이송하는 등 번거로운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다. 개정안으로 친권상실 신고를 위탁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13일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현 정부가 아동정책 추진방안¹⁵⁾을 발표했는데,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해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후견 필요 아동 발굴, 후견인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유기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부모의 빚 상속, 특수육구(정신장애 등) 등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입·퇴원·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권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예시와 같이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한이 부여된다면 많은 위탁가정이 겪고 있는 법과 제도로 인한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탁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을 진행하며 법 정책과 재판 실무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에 정부가 제시한 위와 같은 정책 계획이 잘 추진될까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정부의 아동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탁가정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겠다.

권지연 상담위원

1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13)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14) 제120조(관할) 별표 3 나목4) 및 5)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 및 별표 3 나목6) 및 7)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은 제112조에서 정한 가정법원 외에 사건본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1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4. 13(목) 10:00, 서울청사)”, 국무총리비서실(2023. 4. 13.) 참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6)

음주 문제의 연속성¹⁾

아래 4단계의 순서가 여러 해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마지막 단계로 급진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알코올성단계(Prealcoholic phase)

사교적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즐기는 단계입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없으면 술 마실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간혹 긴장을 풀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볍게 술을 마시는 정도입니다. 술을 마시면 고민이 줄어들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는 등 술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합니다.

전조단계(prodromal phase)

술에 대해 매력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술을 이용하여 기분변화를 느끼려 하기 때문에 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술 마시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과음을 하게 되며, 가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정적 단계(crucial phase)

음주가 습관화되어 행동통제가 서서히 상실됩니다. 하루 중 수시로 마시거나 혼자 마시기도 하며 식사를 거르면서 술을 마십니다. 음주의 빈도가 너무 많아서 주위 사람들의 충고가 빈번해집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주하는 일도 있습니다.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기연민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1)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음주의 심각성에 따라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및 문제음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알코올 의존은 내성이나 금단 증상과 같은 신체적 결과나 통제력 상실이나 갈망과 같은 심리적 결과로 인해 금주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알코올 남용은 사회적 기능은 손상되었지만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강박적 충동이 아직은 주된 문제가 아닌 상태로 정의됩니다. 문제음주는 과음, 의존 증상, 음주 관련 사회적 결과 등에 의하여 측정되어지며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의존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Institute of medicine, 1990).

에 빠집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후회와 자책감, 수치심, 부정적 자아상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만성적 단계(chronic phase)

알코올중독 상태가 오래 지속된 상태이며, 술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단계입니다. 술에 대한 내성이 강하

고 금단 증상도 강렬하지만 술을 마시면 금단 증상이 곧 사라집니다. 마치 술을 마시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알코올 의존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본인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술주정뱅이라 합니다. 외모나 사회적 적응에 무관심해지고 며칠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기도 하며, 신체적 질병은 물론 생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폐인상태로 갑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기준(DSM-5)

■ **임상적으로 심각한 기능손상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알코올 사용의 부적응 패턴 11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나타났어야 한다.**

- 1) 알코올을 흔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 또는 더 오랜 기간 마신다.
- 2)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통제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매번 실패한다.
- 3) 알코올을 구하거나, 마시거나, 또는 알코올의 효과로부터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 4) 알코올을 마시고 싶은 강한 갈망 또는 욕구나 충동이 있다.
- 5)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주된 역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 6) 알코올 효과로 인해 초래되거나 악화되는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적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한다.
- 7)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또는 여가활동이 포기되거나 감소한다.
- 8) 신체적으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한다.
- 9) 알코올로 인해서 초래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가 있음도 알면서도 알코올 사용을 계속한다.
- 10) 내성이 다음 중 1개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중독이 되거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뚜렷하게 증가된 양의 알코올이 필요하다.
 - ② 같은 양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도 뚜렷하게 감소된 효과가 나타난다.
- 11) 금단이 다음 중 1개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알코올의 특징적 금단 증후군이 나타난다.
 - ② 금단증상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알코올(또는 벤조디아제핀과 같이 알코올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질)을 마신다.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마침내 이룬 호주제 폐지 (2)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소, 전국적인 호주제 폐지 홍보
11월	법무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16대 국회에 제출
2004년 6월	법무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17대 국회에 제출
2005년 2월 3일	상담소가 주도한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3월 2일	주도적인 호주제 폐지 운동의 결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남계·부계혈통으로 이어진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구조를 양계혈통으로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을 내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그간 법적인 약자이자 희생자로 불이익을 당해왔던 여성과 어린이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양성평등과 민주주의, 개인의 존엄에 입각한 사회 흐름의 변화에 뒤처져 부계와 남계혈통 중심의 가계구도를 고집함으로써, 부계혈통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수많은 가정과 그 구성원들에게 비정상이라는 굴레를 씌워 차별해왔던 민법이 비로소 21세기에 맞는 양계혈통 중심의 가족관계를 규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진정한 성평등, 부부평등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갖게 될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호주제의 폐지는 평등한 개인과 개인이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이며, 부적절하게 정상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는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었다.

호주제 폐지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는 데 앞장선 상담소는 가정 내 완전한 성평등과 부부평등을 위해 민법상 남녀차별, 부부차별 조항의 완전한 폐지 또는 개정·신설하는 작업에 곧 착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잊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폭력 부인하고, 신고에 불만 가져도
상담 과정에서 성찰, 반성하고
인식과 태도의 변화 보이며 가족 화해로 귀결돼

2020버7**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집단상담 3회
(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전화상담 1회
피해자(아내) 전화 연락 및 문자메시지 발송 1회,
등 11회

상담기간

2021. 1. 26. ~ 2021. 7. 1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38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38세, 25세)이 있다. 행위자는 사업을 하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해자도 보증을 서서 같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가족은 딸 명의 전셋집에서 살았는데 이사 문제로 언쟁하다 본건 폭력이 발생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후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집을 얻어 혼자 살았으며, 피해자는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폭력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부끄럽고 자기중심적으로 일관하였음을 인식하고 반성하였다.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많

이 성찰하고 반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상담 중기에 행위자는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집에도 다닌다고 변화를 보고하였다. 피해자와 자녀들은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지만 임차한 집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요인은 행위자가 반성하고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 등에서 많이 노력했다는 점을 꼽았고, 피해자로부터도 인정 받았다고 하였다.

종결상담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건 이후 폭력 재발은 없었고, 피해자와도 잘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가 8월에 있는 어머니 추도식을 집에서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관계는 개선되었고,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향후 부부관계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4회,
교육강좌 3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4회(비대면 진행),
행위자의 배우자 전화상담 2회
등 21회

상담기간

2021. 1. 15. ~ 2021. 7. 1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들)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지방에서 가족과 살다가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2012년부터 혼자 서울에 와서 지냈다. 피해자는 2019년에 대학 입시학원에 다니기 위해 서울로 와서 혼자 지내다가 2020년에 여동생도 서울로 오게 됨에 따라 행위자와 두 자녀가 함께 지냈다.

행위자는 2020년 9월 사건당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원이 쉬게 되면서 피해자가 늦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욕을 하면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의 배우자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혼자 지냈는데 본 사건 발생 전인 2020년 7월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위자는 이혼의사가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배우자는 행위자가 혼자 지내면서 집안 대소사나 자녀 양육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경제문제에 무책임하였으며, 부정행위 의심도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위자의 해명을 듣고 화해, 소를 취하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도 화해하였다. 피해자는 2021년에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에 가지 않을 때는 행위자와 지내면서 비대면 강의를 들었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많이 놀랐지만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상담을 받으면서 변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였다. 또한 집단상담에서 성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도움을 받았다. 행위자는 부친의 규제나 간섭이 싫어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에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측면이 있는데 피해자가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자녀에게 간섭이 아닌 관심과 애정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등 부모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상담의 성과로 꼽았고,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였다. 배우자는 행위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020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1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4회(비대면 진행)
피해자(딸)	개별상담 4회
행위자 및 배우자	부부상담 4회
행위자의 배우자	개별상담 1회
피해자와 어머니	모녀상담 1회
행위자와 피해자	부녀상담 1회
등	23회

상담기간

2021. 2. 1. ~ 2021. 8. 1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2녀가 있는데 큰 딸은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피해자는 둘째 딸이다.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평소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였다. 행위자는 2020년 3월 사건 당일 같이 밥을 먹던 피해자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피해자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불안을 느끼면 폭언을 하고, 유리창이나 물건을 부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본인의 공격적인 행동을 본건 발생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행위자는 자녀의 폭력에 참다가 대응한 것이지만 폭력임에는 분명하다고 인정하고 처분을 수용하였다.

행위자 가족은 피해자가 어릴 때 5년간 미국생활을 하였고, 피해자는 중 1때부터 미국에서 홈스쿨링을 하였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받았다.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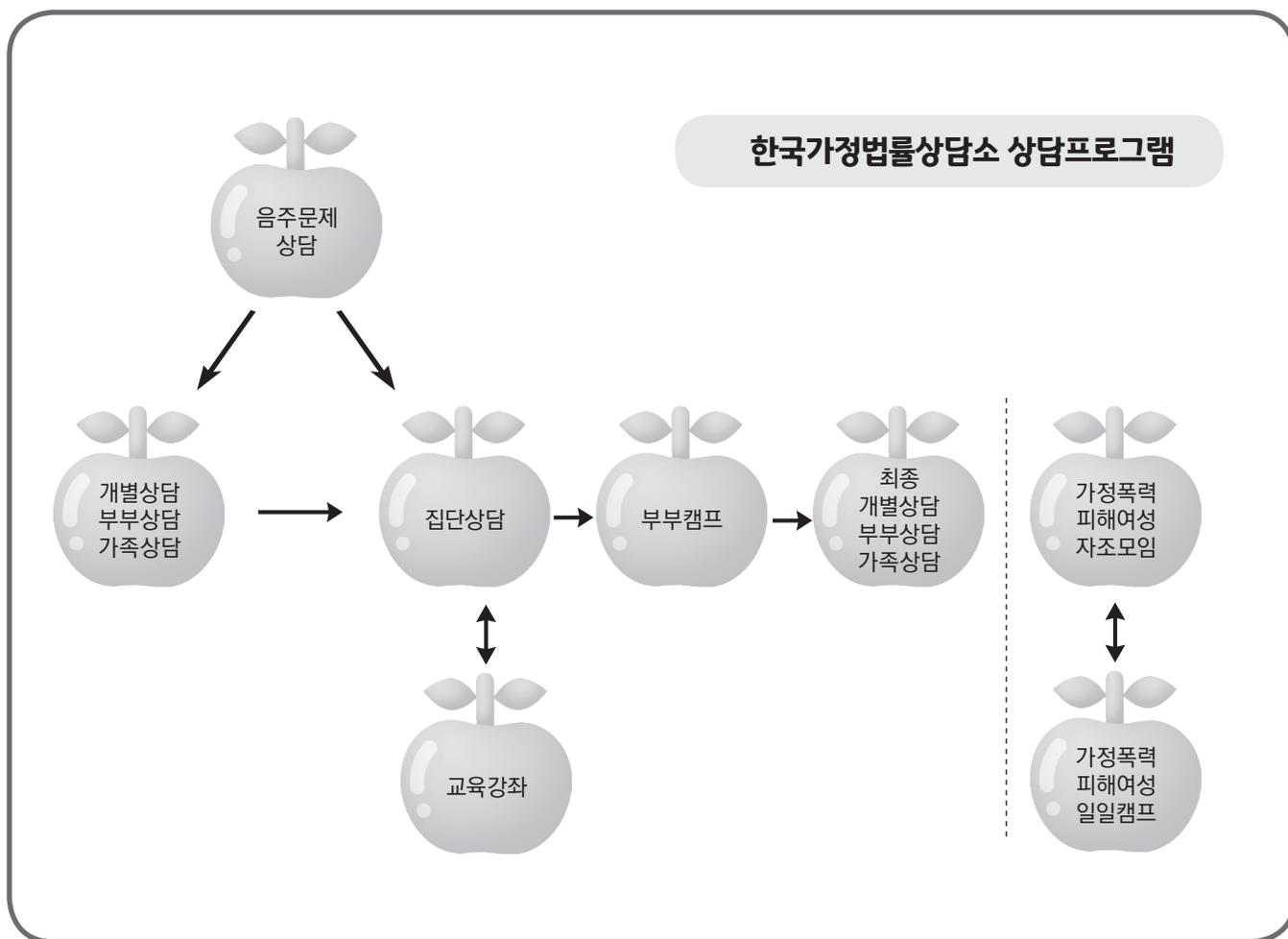
였고 미국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휴학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2021년 9월 입학 예정이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현재 상태에서 미국에 보내야 하는지, 한국에서 지내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고통스럽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어 행위자 및 배우자,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결과 가족들 간에 감정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는 불안이 엄습할 때 복식호흡, 명상 등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실천하였다. 피해자 상담 결과, 피해자가 가진 생각과 현실과의 괴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성격장애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본소 외의 상담기관에서도 상담을 받는 중이었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성격특성을 설명하고 현실

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지지적인 태도, 2. 원칙 지키기, 3.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안내하였다.

종결상담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평온함을 많이 찾았으며 가을학기에 미국으로 가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행위자의 아버지 역할 점수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고, 더 보완할 점은 없으며 지금처럼만 계속하면 된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많이 좋아졌고, 폭력적으로 되는 횟수가 매우 드물어졌음을 보고하였다. 부모는 피해자의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애쓰고 있고, 특히 행위자는 ‘훈육하는 아버지’가 아닌 ‘들어주는 아버지’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에게는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생을 잘 개척하도록 격려했으며, 행위자에게는 자녀를 지켜보면서 애정을 놓지 않는 아버지이기를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이 혼 17

●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

Q 문 64 | 남편과 계속되는 불화로 이혼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양육권을 제가 갖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권리가 없는지요?

A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 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내지 제5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따라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비양육친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Q 문 65 |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나 모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¹⁾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1) 양육비청구에 필요한 서류 : 양육비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자녀 각1통), 주민등록표 등본(부모, 자녀 각1통), 입증자료(예: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 이혼 시 약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Q 문 66 |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셋을 제가 맡기로 하고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전남편 봉급의 80퍼센트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편은 이혼 당시 자신이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약정한 내용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전남편은 이혼 시 약정한 내용대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양육비 액수는 다시 정할 수 있다

Q 문 67 | 이혼하면서 아이를 제가 맡기로 하고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편은 사실 적지 않은 수입이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합의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와 현 배우자의 친생자녀 추정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5조에 따르면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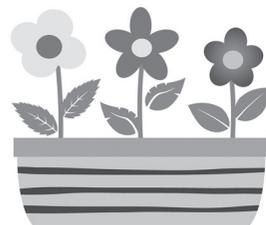
Q 저는 2022. 5. 7.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전 남편과 이혼신고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2022. 5. 8.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3. 2. 21.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려고 하니 아버지를 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당시 장기간 별거하다가 이혼 절차 진행만 늦어진 상황인데, 현재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을 상대방으로 하여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녀 추정이 경합함을 원인으로 민법 제845조 및 가사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서 자녀의 아버지를 정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슬기 변호사

A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법률혼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또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내지 제3항).

2023. 2. 21. 출생한 귀하의 자녀는 2022. 5. 7.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면서 2022. 5. 8. 혼인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것이어서, 전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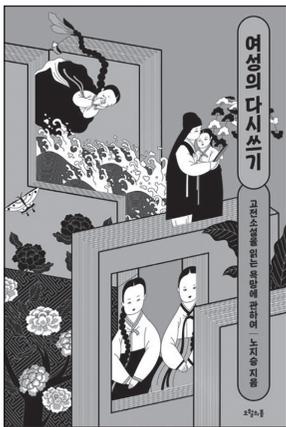


여성의 다시쓰기

고전소설을 읽는 욕망에 관하여

노지승 지음

오월의 봄, 2022(초판 1쇄)



어릴 때 읽었던 이야기책의 몇몇 대목은 지금도 혼란스럽다. 여러 가지 판본이 있었지만 ‘자유 교양’이라는 제목이 앞에 있던 고전 이야기 중 <공주 팔जू>에서 팔जू와 팔जू 엄마의 최후는 교훈이라고 하기에 지나치게 엽기적이고 공포스러웠다. <선녀와 나무꾼>은 아주 어릴 때 읽은 그림책인데도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눈에 그려질 정도로 선하다. 노모의 남루한 옷차림, 말 위에서 노모의 죽을 받아 든 전직 나무꾼, 그는 결국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고 선녀였던 아내, 세 자녀와도 영영 작별해야 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껴야 했을까? 안데르센의 동화 <완두콩 공주>는 어떤가, 정말 어렸을 때 읽어도 이게 뭐지 싶었던 기억이다. 두꺼운 몇 겹의 이불 아래 놓인 완두콩 한 알에 잠을 설쳐야 진짜 공주라니!

고전소설을 두고 ‘여성’ 독자들이 새롭게 읽어내고 다시 써 내려간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문화연구서가 이 책 『여성의 다시쓰기』다. 이 책은 최초의 춘향전 영화에서 호스티스 드라마 그리고 오늘날 대중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여성적 다시쓰기의 변천사를 면밀하게 추적해 보여주고 있다. 지은이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은 여성이라는 마이너리티가 기존의 잘 알려진 텍스트를 활용한 개작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기입하는가에 관한 책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너무도 잘 알려진 춘향전, 장화홍련전, 심청의 변모를 역사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늘에 소환한다. 이렇게 많은 춘향과 장화홍련 그리고 심청이라니,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었다. 고전소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 여성 서사인 춘향전, 장화홍련전, 심청전은 가부장제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데 시대의

흐름과 함께 새롭게 변주되면서 시대상을 담아내고 변화 한다.

“누구의 것도 아닌 춘향/ 춘향전의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 자매애와 모성에 다시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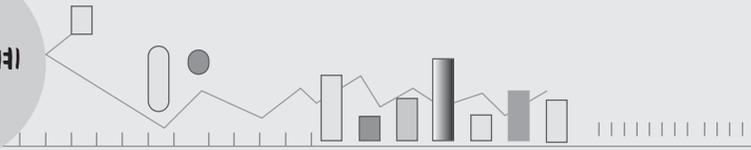
누가 심청을 착취하는가/ 도시로 간 심청 혹은 70년대 여성 프롤레타리아” 목차만 보아도 주제가 보인다.

예를 들어 자매애와 모성에 다시쓰기의 ‘장화홍련’은 1970년대 들어 이들 자매와 계모의 갈등이 ‘상속’ 문제에서 불거진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가족계획과 상담소가 주도한 가족법개정운동이 마침 동시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아들과 딸의 상속 비율이 조정되는 가족법개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20세기 이후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창작되어온 개작 텍스트들은 이렇듯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래 가려졌던 여성의 욕망을 돌아보는 주체적 다시쓰기의 산물인 것이다.

그리하여 지은이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춘향과 장화·홍련과 심청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텍스트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모습을 더 이상 어떤 개작 텍스트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완전히 성차별을 극복하여 가부장제를 더 이상 새삼스럽게 비판하거나 공격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은이 노지승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과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

이숙현 편집부장



곽배희 소장,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면담

본소 곽배희 소장은 4월 19일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여 2023년 2월 취임한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과 면담하였다.

면담에서 곽배희 소장은 본소가 1963년 가사심판법 설치를 위한 가사심판법 제정 작업과 가정법원 개원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2000년 초부터 본소가 주도한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전 상담 법제화운동의 반향 속에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전 상담법안 등을 의원발의한 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위원회 1기와 2기에 본소 상담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점 등 서울가정법원과 본소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본소가 2011년부터 서울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장상담 통계 등 상담동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그 외에 본소가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으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수탁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본소 상담위원 3명이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하게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향후 본소 방문의사를 밝혔다.

이날 면담에 법원측에서는 조영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대통령 표창받아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이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률문화 향상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조경애 부장은 1998년부터 본소 상담위원으로 법률구조 활동에 헌신하며 상담소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사진 2면)

제60회 법의 날 기념 '출장법률상담 및 교육 행사 - 무료법률상담에서 소송구조까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역사 안에서 진행

본소는 제60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4월 14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역사 내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장법률상담 및 교육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민사, 형사, 가사사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하였다. 또한 가족법 상식, 법률구조 안내 브로슈어 등 꼭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내용과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가족법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본소 상담위원들과 소속 변호사,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했고 시민들의 호응 속에 상담과 상담소 안내에 200여 명이 참여했고, 가족법개정서명운동에도 135명이 동참하였다. (관련사진 2면)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회의
법률구조공단 실무자 및 용역 수행팀 본소 방문



지난 4월 20일 법률구조공단 실무자들과 전산관련 ISP 용역업체 수행팀이 본소를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 이하 직원들과 함께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구조기관 간 플랫폼 구축방향 및 연계방안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본소의 가사관련 법

률상담 및 화해 조정 등을 부각하여 이용자에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4월 27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분노는 과학이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강사는 자신이 분노를 느낄 때 분노의 정체를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자신)의 분노 원인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상대에게도 상대가 나를 향한 분노가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강의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5월 25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2023년 4월 상담통계

총 건수 4,843		
법률상담 (3,980)		
면접	전화	인터넷
852	2,954	174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748	47	68

• 인터넷 정보 이용 60,279 건

2023년 4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843건이었다.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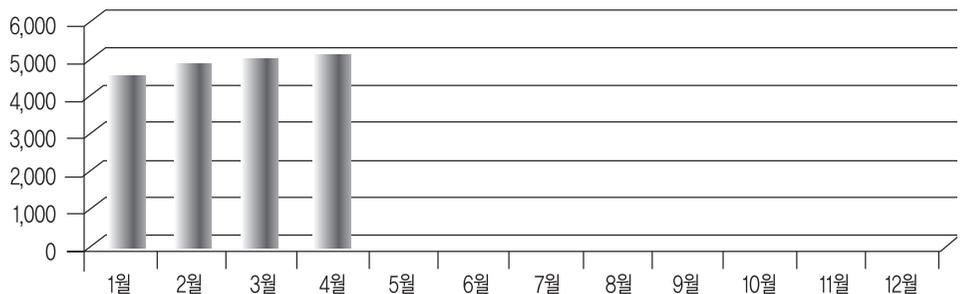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980건(82.2%), 화해조정 748건(15.4%), 소장 등 서류작성 47건(1.0%), 소송구조 68건(1.4%)이었다.

법률상담 3,98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3월에 비해 남녀관계(0.1%→0.3%), 이혼(18.4%→18.8%), 사실혼해소(0.4→1.0%), 위자료·재산분할(6.9%→7.5%), 친권·양육권(4.4%→4.5%), 면접교섭권(1.8%→2.0%), 친생부인(0.8%→0.9%), 입양(1.0%→1.2%), 파혼(0.2%→0.3%), 유언·

상속(7.3%→8.1%), 미성년후견(0.8%→1.0%), 가사절차(9.0%→9.1%), 개인회생(0.2%→0.5%), 민사기타(0.7%→0.8%), 형사절차(0.1%→0.2%), 형사기타(0.3%→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98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52건(21.4%), 전화상담 2,954건(74.2%), 인터넷상담 174건(4.4%)이었다.

**2023년
월별
총건수**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 출장상담

- 4.1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가족법)
- 복미영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전규선,
천다라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9일 광배희 소장과 서울가정법원 최호식 법원장 면담에 배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위촉식에 참석하였고, 당일 행사로 추진된 서울구치소 방문에 참여하였다. 10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제7회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현황 및 가정폭력행위자 관련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13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사실혼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사건과

이혼 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7일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각 경찰서 확대예방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 법령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19일에는 본소 광배희 소장의 서울가정법원장 면담에 배석하였다. 25일에는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광배희 소장,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본소 광배희 소장은 지난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기념식 전에 열린 귀빈 대상 식전 환담에 참석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환담을 나누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권영덕, 김정혜, 문은진, 문은희, 박선하,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학생 자원봉사

고원진, 권수민, 김가영, 김기윤, 김민선, 김민주, 김상은, 김유진, 김유진2, 김이훈, 김재형, 김정민, 김지운, 김지오, 나단비, 남현주, 류채현, 박민제, 박인아, 박진희, 박태희, 서유진, 서정훈, 성은별, 신연우, 신영혜, 신정원, 오정민, 원지수, 유지수, 이다연, 이다이, 이선영, 이소운, 이승영, 이양현, 이영호, 이유정, 이은세, 이지민, 이현아, 이혜원, 임수빈, 임현지, 장주원, 장지수, 전혜미, 정다원, 정재은, 최문경, 최신양, 최준영, 최하연, 하유지, 한아름 님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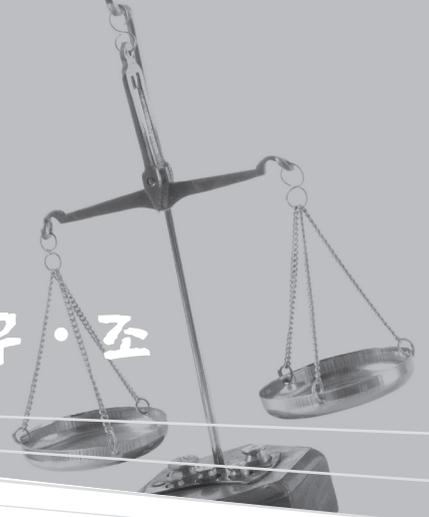
강영열 님

· 일반회원이 되신 분

장인복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최정난, 이현혜, 천정환 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사기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382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2001년경 친한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두 달 뒤 재차 부탁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 신청인은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친구의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딱한 마음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5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 이후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고, 배우자와 생활고로 인한 잦은 갈등이 발생하여 2003년경 결국 이혼하였다. 이혼 후 신청인은 매일 술에 의존한 채 살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뇨합병증이 발생하여 왼쪽 눈과 발가락을 잃게 되었다. 생계를 위해 일용근로라도 하려 했지만 장애가 있는 신청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심한 폭언과 폭행, 자녀들에 대한 학대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2-1-398

담당 : 이수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는 피고(남, 4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과 미성년인 사건본인 2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함께 거주하던 피고의 모친 역시 원고와 어린 자녀들에게 폭언과 아동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 ‘도망가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다,’ ‘할복자살 하겠다’ 등의 위협을 자주하였다. 더이상 견디기 어려워진 원고는 경찰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지내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2023. 2.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 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2023. 3.까지는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2:00에서 17:00 사이에 사건본인들이 피고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한다.

2) 2023. 4. 이후부터 월 2회,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11:00부터 20:00까지(추후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서로 협의하여 면접교섭을 확대한다)

나. 방법: 피고가 원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신고 후 여행 비자로 입국한 뒤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2-1-409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0대)와 피고(여,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2021년 2월경 SNS로 태국 국적인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혼인하기로 결심하였다. 2021년 4월경 피고의 입국을 위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즉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석연치 않은 사유로 탈락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2022년 8월경 마침내 피고의 결혼 이민 비자가 발급되었는데, 피고가 여행 비자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위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피고를 신뢰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입국 후에도 취업할 방법만을 찾다가 여행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원고에게 SNS로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가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연락두절 된 피고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2.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건강악화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454

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0대)은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학원의 매출이 급성장하여 본사 이직을 권유받았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후 전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다. 신청인은 책임져야 할 가족이 늘어 강사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웠다. 이에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지인의 말과는 달리 학원에 부채가 있어 인수와 동시에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매일 아침 광고 전단지 붙이고 주말도 쉬지 않고 일했으나 좀처럼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강사 없이 혼자 수업을 했지만 경쟁학원처럼 셔틀차량 운행이나 기타 이벤트 등이 없는 관계로 학부모들의 불만만 커졌다. 신청인은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였지만 신

청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은 조울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아 수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다. 결국 학원은 자연스럽게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신청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이혼하고,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건강상 이유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3. 9.)
채무자를 면책한다.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1-1-328, 2022-1-347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70대)는 2009년 8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의처증 증세가 있어 원고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며 칼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 2020년 6월경 원고가 전혼자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피고는 원고가 손님과 대화를 나누면 손님과의 사이를 의심하며 원고를 괴롭혔다. 피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와 원고의 딸이 몸을 팔아 장사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였다. 2020년 12월경 원고의 식당에서 아들 친구가 생일파티를 해 원고가 늦게 귀가하자 피고는 원고와 아들 친구의 사이를 의심하며 각목으로 원고의 이마를 내리쳤고, 원고는 사력을 다하여 피고를 밀치고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자 다음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회갈을 들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제1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결과 : *2021-1-328(제1심)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8. 23.)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7.부터 2022. 8.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2-1-347(제2심)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4. 6.)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무리한 사업운영 등 무책임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가출한 지 10년이 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270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결혼 전 자신의 나이, 월급, 형제자매가 10남매인 사실 등을 속였고, 결혼 후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원고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결국 1년 반 만에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4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느라 현재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2.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3년 5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5월 8일, 5월 22일, 6월 26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5월 25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인 자율성
6월 22일	관계에서의 상처
7월 27일	공감능력
8월 24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1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6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3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교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5월 10일	열등감 : 나보다 잘난 너, 나 잘난 맛에 살고 싶다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6월 14일	후회 :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 현명하게 살고 싶다	
7월 12일	매사 불만족과 관계갈등을 초래하는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월 9일	시간이 흘러도癒어지지 않는 고통, 트라우마	
9월 13일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분장애	
10월 11일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 불안장애	
11월 8일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12월 13일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3년 8월 17일~19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내용 :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연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7주년 및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정 방향

|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장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년후견학회 회장)

토론발표

우종인 (한국치매협회 회장, 서울의대 명예교수)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혜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올해는 우리나라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종전의 금치산제도에 비해 발전된 제도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를 통한 대체의사결정으로 이행하는 구조여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장애인의 법적능력향유와 그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의사결정제도의 폐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제도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67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관점에서 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눈부신 일상

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